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(4급 또는 5급 1명, 6급 1명)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국토교통부,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5항 중 “2026년 6월 30일”을 “2028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별표 6 중 5. 제59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6년 6월 30일) “2026년 6월 30일”을 “2028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(한시정원) ①・② (생 략)	제59조(한시정원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삭 제	
⑤ 공항건설 사업 추진 등을 위 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<u>2026년 6월 30일까지</u>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 부에 둔다.	⑤ ----- ----- ----- --- <u>2028년 6월 30일</u> ----- ----- -----.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 정원 대비표

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[별표 6]

국토교통부 공무원 한시정원표(제59조 관련)

직	급	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	.		.	.	
	.		.	.	
5. 제59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 (존속기한: 2028년 6월 30일)			<u>5. 제59조</u> <u>제5항 관</u> <u>련 한시정</u> <u>원(존속기</u> <u>한: 2026</u> <u>년 6월 30</u> <u>일)</u>	<u>5. 제59조</u> <u>제5항 관</u> <u>련 한시</u> <u>정원(존</u> <u>속기한: 2</u> <u>028년 6</u> <u>월 30일)</u>	
	.		.	.	
	.		.	.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50